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71호

나. 발 의 자 : 채수지 의원 외 22명

다. 발의일자 : 2022년 10월 17일

라. 회부일자 : 2022년 10월 21일

2. 제안이유

- 상설운영 필요성이 적은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상설 전환하는 한편,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민간위탁 사무규정에 부합하도록기능 재정비가 필요함.
-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종료된 사업 등은 관련 조항 정비 및 현행화

3. 주요내용

- 가.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안 제9조)
- 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능을 사업 집행 중심으로 변경(안 제12조)
-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공유지 무상 임대 규정 삭제(안 제15조)

라. 사회적경제 특구(한시사업) 등 종료사업 관련 조항 삭제 및 현행화(안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6조)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개정안은 개최실적이 저조한 사회적경제위원회의 비상설화와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의 기능 정비, 관계법령에 근거가 없는 공유지 무상임대와 한시사업으로 종료된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 규정의 삭제로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됨.

나.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의 연혁

-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으며 이윤의 극대화보다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을 의미함.
- 어울시는 2011년부터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했으며, 「서울특별시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2012.7.30. 제정),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2014.3.20. 제정),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 기본 조례」(2014.5.14. 제정)를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당초에는 사회적경제의 저변확대를 위해 사회적기업중심 생태계조성을 목표로 했으나,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2.0'을 발표 (2019.3.14.)하면서 ▶시민생활문제의 사회적경제 방식해결, ▶융합형민민·민관협치 강화, ▶공간 및 사회적금융 지원을 통한 생태계기반 강화, ▶공공 및 민간판로 확대, ▶국제연대와 협력 강화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됨.
- 이처럼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은 2012년 대비 약 7.8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서울소재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

(단위: 개)

구 분		2012	2020	2022.9.
	합 계	788	6,140	6,121
	사회적기업	533	1,003	1,015
	인증	169	518	592
	예비	364	485	423
	협동조합	16	4,338	4,858
	일반	15	3,761	4,072
	사회적	1	623	786
	마을기업	72	113	120
	지정	72	96	112
	예비		17	8
	자활기업	167	127	128

 ○ 그러나 사회적경제위원회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이 민관협력 구조로 운영되면서 ▶과도한 정책예산 의존, ▶전문인력 부족과 이해충돌,
 ▶일부 단체의 독점적 사업추진 등의 문제가 발생함.

- 또한, 일부 사업에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의 낮은 이해도와 복잡한 사업구조의 문제가 반복 지적되었고, 명확한 성과평가 없이 사업을 추진・확대¹⁾하거나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를 이유로 자치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한 보조금을 편성하는 문제²⁾도 있었음.
- 개정안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종료된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있음.

다. 주요 개정사항 검토

- (1) 사회적경제위원회 관련 규정의 정비 및 비상설화(안 제8조, 안 제9조)
- 개정안은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신설(2015.7.30.)되면서 사회적경제 기본 계획의 심의・의결 주체가 희망경제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위원회로 변경되었으나, 조례의 해당 조문에는 희망경제위원회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정비함(안 제8조).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회적경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제9조의 <u>희망경제위원회</u> 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	제8조(사회적경제 기본계획) ① 사회적경제위원회
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¹⁾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사회성과보상사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 등

²⁾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회적경제 특구 운영 등

○ 또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비상설화하면서 위원의 구성, 임기, 해촉, 정기회의 등의 상설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회의 개최 요건을 변경함(안 제9조).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회적경제위원회) ① (생 략)	제9조(사회적경제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 ·</u> <u>자문한다</u> .	② <u>심의 ·</u> <u>자문할 수 있다</u>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 내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 .	③ <u>구성하고, 특정 성별이</u>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장은 <u>행정1부시장과 위촉직</u>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u>노동·공정·상생정책관이 된다.</u>	④ <u>위촉직</u> 시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국장이 맡는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u>위촉한다</u> .	⑤ 위촉하되,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시의 예산 업무 담당 국장	<u><삭 제></u>
4. • 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 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삭 제>
8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삭 제>
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	⑨ 시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u>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① · ① (생 략)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 ⑫ (현행 제10항 및 제11항과 같음)

- 사회적경제위원회는 당초 희망경제위원회 산하의 분과위원회로 운영 되었으나, 사회적경제 발전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심의·자문하기 위해 신설됨.
 - 주요 심의·자문사항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 등임.
 - 위원은 당연직³⁾과 시의원 2명을 포함한 위촉직 20명 이내로 구성되나,
 2기 위원회 활동 종료(2017.4.24.~2021.4.23) 후 신규 위촉이 이루어
 지지 않음.
-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최근 5년간 회의 개최 횟수가 3회4에 불과하고,
 '2022년도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2022.4.7.)에 따라 최근
 1년 이상 개최 이력이 없어 비상설화가 추진됨.

³⁾ 행정 1부시장,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시의 예산 업무담당 국장

^{4) 2017}년 사회적경제 종합계획 및 운영방향 검토(2017.4.24.), 사회적경제 활성화 2.0 종합계획(안) 검토(2019.4.3.), 제2차 서울시 협동조합 기본계획 의결(서면, 2020.12.18.~24.)

< 2022년도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 요약 >

	그 ㅂ 체다 이이희						
		구 분	해당 위원회				
조	폐 지 (3)	설치목적 달성 및 여건 변화로 필요성 감소	경제민주화위원회,·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 희망경제 위원회				
례	통폐합 (2)	유사기능 위원회 통·폐합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위원회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개 정 (14)	비상 설화 (9)	목적·기능상 필요하나 운영실적 저조	서울시립대학교운영위원회, 주소정보위원회,·주거정책심의위원회,·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주민투표청구심의회,·유통분쟁조정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사회주택위원회,민주화운동기념및정신계승위원회				
법 령 개	폐 지 (2)	설치목적 달성 및 여건 변화로 필요성 감소	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위원회				
정 건 의 (6)	비상 설화 (4)	목적·기능상 필요하나 운영실적 저조	공동구협의회,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대부업분쟁조정 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방침	폐 지 (1)	설치목적 달성 및 여건 변화로 필요성 감소	생활문화협치위원회				
수 립 (9)	운영 활성화 (8)	설치 2년 이하 위원회, 미개최 1년인 위원회 등	DMC기획위원회,물가대책위원회,·기반시설관리위원회, 물순환시민위원회,·청계천시민위원회, 서울교육복지민관 협의회,·창업정책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 매년 분기 또는 반기별로 정기회와 임시회가 개최되고 상시적으로 위원이 구성되는 상설위원회와 달리 비상설위원회는 전문가 인력풀을 이용하여 필요시에만 위원을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함.
- 개최실적이 부진하여 형해화(形骸化)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이해할 수 있음.
- 다만, 최근 1년간 위원이 위촉되지 않아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다는 점과 정책 집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주체의 자립성 강화 등의 대책을 논의할 상시적인 공론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

 또한, 정책환경의 변화로 인해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예산과 조직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주요계획을 심의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비상설화 하면 사회적경제 분야의 전반적인 약화를 불러올 수 있음.

(2)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정책 관련 기능 삭제(안 제12조)

○ 개정안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사경센터")의 정책 협의·조정,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등의 기능을 삭제하고, 사업 집행 기능 중심으로 전환함.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2조(지원센터의 기능)
1.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종합적 지원	1.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2.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 및 판로지원
3.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3.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및 교육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4.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지원
5.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지원 및 업종, 지역 및 광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지원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인식 제고
6.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7. 사회적경제기업 모니터링 및 평가	<u><삭 제></u>
8.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지원체계 구축	<u><삭 제></u>
9.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	<u><삭 제></u>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삭 제>

- 이는 현재 사경센터의 기능 중 정책 협의·조정,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등은 서울시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무이며, 민간위탁 사무는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비권력적 사무에 국한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또한, 사경센터는 종전에 수행한 연구 사업 63건 중 52건을 외부용역이나 지원사업으로 진행하면서 고유사업의 제3자 위탁을 금지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점을고려한 것임5).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연구 사업 현황 >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63	10	9	9	9	1	5	5	8	4	З
자체연구	11	2	3	_	-	_	_	_	1	2	З
용역발주	25	4	1	2	3	1	2	5	5	2	_
지원사업	27	4	5	7	6	_	3	_	2	_	_

- 다만, 사경센터가 2013년부터 동일한 사무를 수행하면서 민간위탁대상 심의와 적격자심의를 4차례 받았으나 정책 관련 업무가 민간위탁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관련되어 민간위탁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은 제시된 바 없음.
- 또한, 그동안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직·간접적인 연계를 통해 수립

⁵⁾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 ⑤ (생략)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되던 기본계획이 사경센터의 사업에서 삭제되면서 관주도의 사업설계가 이뤄질 우려가 있음.

(3) 공유지 무상임대 근거 삭제(안 제15조)

 개정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이나 운영시에 공유지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시설비 등 지원) ① 시장은 관계 법규에	제15조(시설비 등 지원) ①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u>임대 및 무상 임대</u> 할 수 있다.	임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와 대부료의 면제에 대해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법률⁶⁾에는 무상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공유재산 면제 규정 >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6)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중증장애인생상품 우선구매 특별법」

-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공유지(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하게 됨.
 -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리운영실태 특정감사' (2022.6.)에서 감사대상 기간(2017.7.~2021.11.) 동안 사경센터 대관 1,619건 중 13건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하여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대관료를 전액감면한 점을 지적하며, 현행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개정안은 이 같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참고하여 위법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됨.
- (4) 사회적경제 특구 관련 조항 삭제(안 제3조, 안 제10조, 안 제16조)
- 개정안은 종료된 사회적경제 특구와 사회적경제 예비특구에 대한 정의(안 제3조), 지정 및 지원 근거(안 제10조), 사업비 지원 근거(안 제16조)를 삭제함.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사회적경제 특구"란 지역의 특성과 결합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을 개발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성공 사례를 창출한 지구를 말한다.	<u><삭 제></u>
9. "사회적경제 예비특구"란 "사회적경제 특구"로 지정되기 이전의 단계로, 서울특 별시가 "사회적경제 특구"로 육성하기 위하 여 지원하는 지구를 말한다.	<삭 제>
제10조 (사회적경제 특구의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의 지역기반을 강화하고 서울형 사회적경제 창출을 위하여 자치구와 협력하여 "사회적경제 예비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사회적경제 예비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예비특구"로 지정된 자치구 및 참여 기업에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사업 추진에필요한 사업비 2. 우선구매, 공간, 금융, 교육, 연구개발지원 등에 있어 우선 지원 3. 시 또는 자치구 관련 부서의 협업 및의견수렴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④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특구"와 연계가능한 사업추진 시 "사회적경제 특구"와 연계가능한 사업추진 시 "사회적경제 특구"와 연계가능한 사업 추진 시 "사회적경제 무기"로 지정된 자치구 또는 참여기업을 우선 사업대상으로 검토해야 한다.	<삭 제>
제16조(재정지원 및 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재정지원 및 기금의 설치)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	<u><삭 제></u>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을 활성화하고, 지역 산업과 자원 간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됨.

<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 개요 >

◦ 지원기간 : 최대 3년 6개월(1년 단위 연장심사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추진단계 : 준비사업(계획 수립)과 본사업(사업 추진)으로 나누어 추진

• 지원기준 : 자치구별 3년 6개월 동안 최대 550백만원 지원

- 준비(최대 50백만원) → 1년차(최대 1억원) → 2·3년차(최대 각 2억원)

• 주요사업 : 지역특성과 결합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개발

- 서울형 사회적경제 대표 분야 및 산업 발굴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활성화 촉진

- 사회적경제와 지역산업 및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구조 형성

• 추진체계 : 지역 내 여러 단체 간 협의체 혹은 기업 간 컨소시엄 형성

- 자치구,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학, 주민 등 참여

구분	역할
서울시	- 자치구 사회적경제 예비 특구 전략·사업모델 구축 자문, 전문가 연결
사회적경제	- 자치구 민간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 대상 공통교육 진행
특구 지원단	- 서울연구원 중심으로 준비사업 평가 및 본사업 추진시 지원 방안 연구
자치구	- 사회적경제 예비 특구 선정 공모 지원, 전략 수립 및 사업 추진
사회적경제	- 준비사업 종료시 사업조직(사회적경제기업 등) 형태의 실행기구로 발전
특구 추진단	- 지역 생태계조성사업단, 산업, 대학, 주민 등 다양한 지역 주체 참여

 사회적경제 특구로 선정된 12개 자치구에는 각각 4억원에서 5억 5천 만원까지 지원하여 총 60억 9천 8백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일부 자치구7에서는 지역기반 사업모델로 제시되는 성과를 거두었음.

⁷⁾ 강동구 : '강동구가죽패션창업지원센터', 광진구 : 돌봄식당 '열린밥상', 노원구 : 되살림가게, 공동선별작업장

<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 지원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총계
총계	293	655	1,625	1,942	1,043	340	200	6,098
관악구	50	50	200	193	_	_	_	493
광진구	48	130	198	200	_	_	_	576
노원구	40	100	200	200	_	_	_	540
마포구	50	50	199	200	_	_	_	499
성동구	55	140	200	155.6	_	_	_	550.6
성북구	50	90	200	195	_	_	_	535
강동구	_	20	110	179.7	214	_	_	523.7
강북구	_	20	94	139.6	154	_	_	407.6
금천구	_	20	90	200	216	-	_	526
은평구	_	15	109	166.2	194	_	_	484.2
동작구	_	20	25	88	158	140	_	431
서대문	_	_	_	25	107	200	200	532

- 그러나 당초 전문가 연계를 위해 구성한 사회적경제 특구 지원단이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고, 심사선정과 사업추진 시 사업모델의 적정성, 확장성, 지속가능성 분석의 한계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음.
- 또한, 복잡한 추진체계와 시장분석 능력 부족, 돌봄이나 급식에 집중된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중도 포기 하는 자치구가 발생하면서 사업을 확대하지 못하고 서대문구에 대한 지원을 마지막으로 사업을 종료함.
- 이에 따라 종료사업에 대한 정의와 지원 근거를 삭제하여 조례의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할 수 있음.

라. 종합의견

- 개정안은 개최실적이 저조한 사회적경제위원회의 비상설화,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의 기능 개편, 공유재산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 정비, 종료된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 관련 규정의 삭제로 조례의 시의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입법적 효과가 있음.
- 다만, 이같은 입법조치에 따라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사회적경제지원 센터가 형해화(形骸化)되고, 지난 10년간 성장해온 사회적경제 분야의 정책적 추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 한편, 개정안의 개정사항 외에도 현행 조례는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⁸⁾, 다른 조례와 중복된 규정⁹⁾ 등이 있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함.

담당 조사관	연락처
최범준	02-2180-8058

⁸⁾ 제19조(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등의 지원), 제21조제2항제5호 국제사회적경제 협의체와 사무국 운영 및 협력을 위한 지원 등

⁹⁾ 제16조(재정지원 및 기금의 설치)는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8조(우선구매 등 지원)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복됨.